

「변동 동건아파트」 우선분양전환 후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42-222-7555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국민주택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5.03.05. 이전부터 계속 거주)	대전광역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6개월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03.05.(목)	2026.03.16.(월)	2026.03.17.(화)	2026.03.23.(월)	2026.03.30.(월)~ 2026.04.01.(수)	2026.04.06.(월)~ 2026.04.08.(수)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 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3.05.(목)**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국민주택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2003.11.25 사용 승인된 (구)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공급된 주택이며 임대유기기간 5년이 경과되어 **우선 분양전환 후 기존 임대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잔여세대 139세대를 일반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 본 아파트의 **분양전환 일자**는 **2024.01.05.이며, 분양금액은 대전광역시서구청 공동주택과-507호(2024.01.05.)로부터 분양전환 승인된 금액입니다.**
- 본 아파트는 종전 임대주택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우선분양전환한 주택으로 분양전환 포기세대의 일반분양으로 일부세대에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기존 임차인과 상호 협의 후 계약만기가 도래되어 세대가 퇴거한 후 실입주가 가능합니다.
- 분양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입주일은 기존 임차인 중 미퇴거 세대에 대해서는 퇴거일정에 따라 입주일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기존 임차인 및 임대차기간을 승계하는 조건입니다.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에서 5년 임대 후 분양전환 실시 후 잔여세대(공가)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기존 입주자의 퇴거 후 주택의 내·외부에 대한 별도의 보수공사 없이 현 상태로 인계하

는 주택이므로 신청자는 계약 전 반드시 세대 내 시설물 및 마감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설물(보일러, 벽지, 장판, 싱크대, 세대 열쇠 등)의 파손, 노후, 미비 및 청소 불량, 철거 등을 사유로 하자 보수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잔금 납부기한(입주잔금 납부기한 이전에 입주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입주 잔금 납부일을 말함) 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재세공과금, 장기수선충당금,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 제 부담금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각 세대별 임차인으로 거주하였던 입주자가 설치한 부합물은 당사에서 설치한 시설이 아니며, 분양가격에 해당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청약저축 또는 주택종합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분	청약저축 및 주택종합청약저축 가입자
세대주 요건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시	1)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매월 최대25만원까지만 인정. 이하 동일)이 많은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산정) 2) 저축총액이 많은 자 3) 추첨(1순위 당첨자 결정순차가 동일한 경우)	추첨

※ 금회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자격을 유지해야하며 해당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1순위 : 입주자저축(주택종합청약저축 또는 청약저축, 이하 동일)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매월납입일에 월납입금 6회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일반공급 청약 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순위순차제를 적용하여 선정(납입인정금액 동일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https://blog.naver.com/verygoodapt>)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예·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국민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민영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이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입주자모집공고일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합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합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APT잔여세대 (무순위 / 임의공급 / 불법행위재공급)	○				X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3.05.(목)**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가(2025.03.05.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6.03.16.(월)	2026.03.17.(화)	2026.03.23.(월)	2026.03.30.(월)~ 2026.04.01.(수)	2026.04.06.(월)~ 2026.04.08.(수)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분양사무실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544, 106호)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람이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국민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나,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해당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국민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에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2026.03.23.)로부터 6개월 적용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서구 공동주택과-6272호(2026. 02. 27.)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59-6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3층, 지상15층 1개동 총 153세대 중 분양전환 후 잔여세대 13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6년 04월 예정(입주일은 기존 임차인 중 미퇴거 세대에 대해서는 퇴거일정에 따라 입주일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구분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금회 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국민주택	2026000046	01	52.7080A	52A	52.7080	18.3606	71.0686	25.3863	96.4549	10.5281	5	-
		02	54.6280B	54B	54.6280	18.9636	73.5916	26.3111	99.9027	10.9116	66	4
		03	59.1080C	59C	59.1080	20.3704	79.4784	28.4688	107.9472	11.8065	55	5
		04	65.0920D	65D	65.0920	22.1826	87.2746	31.3510	118.6256	13.0018	13	1
합 계											139	10

■ 공급금액표

(단위 : 원)

구분	약식표기	주택형	공급세대	분양금액			계약금(10%)	잔금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변동 동건아파트	52A	52.7080A	5	9,135,337	75,923,663	85,059,000	8,505,900	76,553,100
	54B	54.6280B	66	10,253,048	85,212,952	95,466,000	9,546,600	85,919,400
	59C	59.1080C	55	11,074,551	92,040,449	103,115,000	10,311,500	92,803,500
	65D	65.0920D	13	11,694,142	97,189,858	108,884,000	10,888,400	97,995,600

약식표기	호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	현임차인임대조건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만기일
52A	1507	9,135,337	75,923,663	85,059,000	8,505,900	76,553,100	20,000,000	200,000	2027-04-24
	1508	9,135,337	75,923,663	85,059,000	8,505,900	76,553,100	30,000,000	250,000	2027-02-21
	1509	9,135,337	75,923,663	85,059,000	8,505,900	76,553,100	-	-	-
	1510	9,135,337	75,923,663	85,059,000	8,505,900	76,553,100	77,000,000	226,000	2027-11-02
	1511	9,135,337	75,923,663	85,059,000	8,505,900	76,553,100	63,000,000	322,000	2027-12-21
54B	202	10,253,048	85,212,952	95,466,000	9,546,600	85,919,400	85,000,000	47,000	2026-03-14
	203	10,253,048	85,212,952	95,466,000	9,546,600	85,919,400	25,000,000	242,000	2027-12-14
	205	10,253,048	85,212,952	95,466,000	9,546,600	85,919,400	18,000,000	217,000	2027-11-28
	206	10,253,048	85,212,952	95,466,000	9,546,600	85,919,400	42,000,000	50,000	2027-02-03
	301	10,253,048	85,212,952	95,466,000	9,546,600	85,919,400	65,000,000	30,000	2027-10-26
	302	10,253,048	85,212,952	95,466,000	9,546,600	85,919,400	20,000,000	100,000	2027-06-23
	303	10,253,048	85,212,952	95,466,000	9,546,600	85,919,400	53,000,000	30,000	2027-09-05
	305	10,253,048	85,212,952	95,466,000	9,546,600	85,919,400	42,000,000	251,000	2027-07-23
	306	10,253,048	85,212,952	95,466,000	9,546,600	85,919,400	19,000,000	45,000	2027-07-20
	401	10,253,048	85,212,952	95,466,000	9,546,600	85,919,400	58,000,000	43,000	2027-07-02
	402	10,253,048	85,212,952	95,466,000	9,546,600	85,919,400	-	-	-
	403	10,253,048	85,212,952	95,466,000	9,546,600	85,919,400	-	-	-
	405	10,253,048	85,212,952	95,466,000	9,546,600	85,919,400	33,000,000	26,000	2027-07-20
	406	10,253,048	85,212,952	95,466,000	9,546,600	85,919,400	93,000,000	45,000	2027-08-13
	501	10,253,048	85,212,952	95,466,000	9,546,600	85,919,400	88,000,000	44,000	2027-07-02
	502	10,253,048	85,212,952	95,466,000	9,546,600	85,919,400	78,000,000	190,000	2027-06-25

503	10,253,048	85,212,952	95,466,000	9,546,600	85,919,400	78,000,000	150,000	2026-11-18
506	10,253,048	85,212,952	95,466,000	9,546,600	85,919,400	47,020,000	226,000	2027-06-06
601	10,253,048	85,212,952	95,466,000	9,546,600	85,919,400	78,000,000	232,000	2027-04-16
602	10,253,048	85,212,952	95,466,000	9,546,600	85,919,400	80,000,000	200,000	2026-09-28
603	10,253,048	85,212,952	95,466,000	9,546,600	85,919,400	45,000,000	150,000	2027-07-10
605	10,253,048	85,212,952	95,466,000	9,546,600	85,919,400	84,000,000	145,000	2027-03-10
606	10,253,048	85,212,952	95,466,000	9,546,600	85,919,400	68,000,000	252,000	2027-08-04
702	10,253,048	85,212,952	95,466,000	9,546,600	85,919,400	33,400,000	91,000	2027-04-12
703	10,253,048	85,212,952	95,466,000	9,546,600	85,919,400	74,000,000	240,000	2026-04-24
705	10,253,048	85,212,952	95,466,000	9,546,600	85,919,400	16,000,000	150,000	2027-06-19
706	10,253,048	85,212,952	95,466,000	9,546,600	85,919,400	34,410,000	252,000	2027-08-16
801	10,253,048	85,212,952	95,466,000	9,546,600	85,919,400	71,000,000	133,000	2027-07-14
802	10,253,048	85,212,952	95,466,000	9,546,600	85,919,400	90,000,000	-	2028-01-29
803	10,253,048	85,212,952	95,466,000	9,546,600	85,919,400	85,000,000	3,000	2026-05-26
805	10,253,048	85,212,952	95,466,000	9,546,600	85,919,400	26,000,000	232,000	2027-04-13
806	10,253,048	85,212,952	95,466,000	9,546,600	85,919,400	-	-	-
901	10,253,048	85,212,952	95,466,000	9,546,600	85,919,400	-	-	-
902	10,253,048	85,212,952	95,466,000	9,546,600	85,919,400	74,000,000	220,000	2027-01-30
903	10,253,048	85,212,952	95,466,000	9,546,600	85,919,400	80,000,000	239,000	2027-09-19
905	10,253,048	85,212,952	95,466,000	9,546,600	85,919,400	33,000,000	40,000	2027-07-16
906	10,253,048	85,212,952	95,466,000	9,546,600	85,919,400	78,000,000	230,000	2027-08-26
1001	10,253,048	85,212,952	95,466,000	9,546,600	85,919,400	95,000,000	45,000	2026-04-16
1002	10,253,048	85,212,952	95,466,000	9,546,600	85,919,400	16,000,000	210,000	2027-07-12
1003	10,253,048	85,212,952	95,466,000	9,546,600	85,919,400	82,000,000	200,000	2027-04-03
1005	10,253,048	85,212,952	95,466,000	9,546,600	85,919,400	88,000,000	40,000	2027-07-28
1006	10,253,048	85,212,952	95,466,000	9,546,600	85,919,400	87,000,000	120,000	2027-10-14
1101	10,253,048	85,212,952	95,466,000	9,546,600	85,919,400	26,000,000	264,000	2027-03-29
1102	10,253,048	85,212,952	95,466,000	9,546,600	85,919,400	78,000,000	230,000	2027-06-13
1103	10,253,048	85,212,952	95,466,000	9,546,600	85,919,400	81,000,000	213,000	2027-06-18
1105	10,253,048	85,212,952	95,466,000	9,546,600	85,919,400	-	-	-
1106	10,253,048	85,212,952	95,466,000	9,546,600	85,919,400	-	-	-
1201	10,253,048	85,212,952	95,466,000	9,546,600	85,919,400	58,000,000	230,000	2027-08-30
1202	10,253,048	85,212,952	95,466,000	9,546,600	85,919,400	38,000,000	0,000	2027-08-06
1203	10,253,048	85,212,952	95,466,000	9,546,600	85,919,400	36,000,000	180,000	2027-03-13
1205	10,253,048	85,212,952	95,466,000	9,546,600	85,919,400	83,000,000	7,000	2027-05-30
1206	10,253,048	85,212,952	95,466,000	9,546,600	85,919,400	75,000,000	250,000	2027-07-10
1301	10,253,048	85,212,952	95,466,000	9,546,600	85,919,400	83,000,000	40,000	2027-06-04
1302	10,253,048	85,212,952	95,466,000	9,546,600	85,919,400	16,000,000	72,000	2027-12-09
1303	10,253,048	85,212,952	95,466,000	9,546,600	85,919,400	93,400,000	91,000	2027-04-13
1305	10,253,048	85,212,952	95,466,000	9,546,600	85,919,400	16,000,000	150,000	2028-03-12
1306	10,253,048	85,212,952	95,466,000	9,546,600	85,919,400	82,000,000	220,000	2027-12-29
1401	10,253,048	85,212,952	95,466,000	9,546,600	85,919,400	78,000,000	238,000	2027-11-18
1402	10,253,048	85,212,952	95,466,000	9,546,600	85,919,400	78,000,000	237,000	2026-07-25
1403	10,253,048	85,212,952	95,466,000	9,546,600	85,919,400	25,000,000	230,000	2027-05-14
1405	10,253,048	85,212,952	95,466,000	9,546,600	85,919,400	18,000,000	170,000	2027-08-31

	1406	10,253,048	85,212,952	95,466,000	9,546,600	85,919,400	30,000,000	200,000	2026-04-10
	1501	10,253,048	85,212,952	95,466,000	9,546,600	85,919,400	43,000,000	230,000	2027-08-24
	1502	10,253,048	85,212,952	95,466,000	9,546,600	85,919,400	73,000,000	220,000	2027-12-18
	1505	10,253,048	85,212,952	95,466,000	9,546,600	85,919,400	21,000,000	186,000	2028-01-29
	1506	10,253,048	85,212,952	95,466,000	9,546,600	85,919,400	-	-	-
59C	207	11,074,551	92,040,449	103,115,000	10,311,500	92,803,500	100,000,000	35,000	2027-09-28
	208	11,074,551	92,040,449	103,115,000	10,311,500	92,803,500	53,000,000	50,000	2027-08-09
	209	11,074,551	92,040,449	103,115,000	10,311,500	92,803,500	73,000,000	176,000	2027-04-23
	210	11,074,551	92,040,449	103,115,000	10,311,500	92,803,500	60,000,000	5,000	2026-03-15
	211	11,074,551	92,040,449	103,115,000	10,311,500	92,803,500	85,000,000	180,000	2027-04-21
	308	11,074,551	92,040,449	103,115,000	10,311,500	92,803,500	65,750,000	240,000	2027-11-03
	309	11,074,551	92,040,449	103,115,000	10,311,500	92,803,500	55,000,000	100,000	2026-03-24
	310	11,074,551	92,040,449	103,115,000	10,311,500	92,803,500	89,000,000	113,000	2026-03-13
	311	11,074,551	92,040,449	103,115,000	10,311,500	92,803,500	69,600,000	50,000	2027-08-17
	408	11,074,551	92,040,449	103,115,000	10,311,500	92,803,500	23,000,000	230,000	2027-01-21
	409	11,074,551	92,040,449	103,115,000	10,311,500	92,803,500	95,000,000	38,000	2027-10-10
	410	11,074,551	92,040,449	103,115,000	10,311,500	92,803,500	49,000,000	180,000	2027-05-23
	411	11,074,551	92,040,449	103,115,000	10,311,500	92,803,500	90,000,000	35,000	2027-07-30
	507	11,074,551	92,040,449	103,115,000	10,311,500	92,803,500	17,000,000	170,000	2026-07-31
	508	11,074,551	92,040,449	103,115,000	10,311,500	92,803,500	98,000,000	65,000	2026-05-23
	510	11,074,551	92,040,449	103,115,000	10,311,500	92,803,500	83,000,000	150,000	2028-02-05
	511	11,074,551	92,040,449	103,115,000	10,311,500	92,803,500	80,000,000	190,000	2027-04-03
	608	11,074,551	92,040,449	103,115,000	10,311,500	92,803,500	82,000,000	230,000	2027-03-18
	609	11,074,551	92,040,449	103,115,000	10,311,500	92,803,500	93,000,000	50,000	2027-08-15
	610	11,074,551	92,040,449	103,115,000	10,311,500	92,803,500	77,000,000	250,000	2026-09-26
	611	11,074,551	92,040,449	103,115,000	10,311,500	92,803,500	40,000,000	70,000	2026-11-24
	707	11,074,551	92,040,449	103,115,000	10,311,500	92,803,500	83,000,000	130,000	2028-02-09
	709	11,074,551	92,040,449	103,115,000	10,311,500	92,803,500	17,000,000	40,000	2026-07-03
	710	11,074,551	92,040,449	103,115,000	10,311,500	92,803,500	83,000,000	242,000	2027-12-07
	711	11,074,551	92,040,449	103,115,000	10,311,500	92,803,500	80,000,000	240,000	2027-01-18
	807	11,074,551	92,040,449	103,115,000	10,311,500	92,803,500	83,000,000	170,000	2027-06-12
	808	11,074,551	92,040,449	103,115,000	10,311,500	92,803,500	97,000,000	57,000	2027-04-27
	809	11,074,551	92,040,449	103,115,000	10,311,500	92,803,500	63,000,000	242,000	2027-12-02
	810	11,074,551	92,040,449	103,115,000	10,311,500	92,803,500	83,000,000	200,000	2027-02-27
	811	11,074,551	92,040,449	103,115,000	10,311,500	92,803,500	26,000,000	254,000	2026-04-14
	907	11,074,551	92,040,449	103,115,000	10,311,500	92,803,500	72,000,000	225,000	2027-01-30
	908	11,074,551	92,040,449	103,115,000	10,311,500	92,803,500	80,000,000	219,000	2026-07-09
910	11,074,551	92,040,449	103,115,000	10,311,500	92,803,500	88,000,000	40,000	2026-12-17	
911	11,074,551	92,040,449	103,115,000	10,311,500	92,803,500	85,000,000	140,000	2027-06-19	
1007	11,074,551	92,040,449	103,115,000	10,311,500	92,803,500	85,000,000	185,000	2027-10-18	
1009	11,074,551	92,040,449	103,115,000	10,311,500	92,803,500	85,000,000	159,000	2027-01-20	
1010	11,074,551	92,040,449	103,115,000	10,311,500	92,803,500	85,000,000	180,000	2027-10-15	
1011	11,074,551	92,040,449	103,115,000	10,311,500	92,803,500	80,000,000	235,000	2027-05-11	
1107	11,074,551	92,040,449	103,115,000	10,311,500	92,803,500	74,000,000	240,000	2026-05-16	
1108	11,074,551	92,040,449	103,115,000	10,311,500	92,803,500	77,000,000	232,000	2027-06-17	

	1109	11,074,551	92,040,449	103,115,000	10,311,500	92,803,500	85,000,000	220,000	2026-10-24
	1110	11,074,551	92,040,449	103,115,000	10,311,500	92,803,500	85,000,000	150,000	2028-02-26
	1111	11,074,551	92,040,449	103,115,000	10,311,500	92,803,500	83,000,000	220,000	2027-12-19
	1207	11,074,551	92,040,449	103,115,000	10,311,500	92,803,500	85,000,000	159,000	2027-01-14
	1208	11,074,551	92,040,449	103,115,000	10,311,500	92,803,500	88,000,000	40,000	2028-01-28
	1209	11,074,551	92,040,449	103,115,000	10,311,500	92,803,500	90,000,000	127,000	2027-10-12
	1210	11,074,551	92,040,449	103,115,000	10,311,500	92,803,500	65,000,000	180,000	2027-11-28
	1307	11,074,551	92,040,449	103,115,000	10,311,500	92,803,500	21,000,000	252,000	2027-08-25
	1308	11,074,551	92,040,449	103,115,000	10,311,500	92,803,500	83,000,000	200,000	2027-08-17
	1309	11,074,551	92,040,449	103,115,000	10,311,500	92,803,500	83,000,000	27,000	2027-05-28
	1310	11,074,551	92,040,449	103,115,000	10,311,500	92,803,500	90,000,000	155,000	2027-11-19
	1311	11,074,551	92,040,449	103,115,000	10,311,500	92,803,500	84,000,000	225,000	2027-04-04
	1408	11,074,551	92,040,449	103,115,000	10,311,500	92,803,500	85,000,000	70,000	2027-02-28
	1409	11,074,551	92,040,449	103,115,000	10,311,500	92,803,500	79,000,000	251,000	2027-07-19
	1410	11,074,551	92,040,449	103,115,000	10,311,500	92,803,500	80,000,000	230,000	2027-11-29
65D	204	11,694,142	97,189,858	108,884,000	10,888,400	97,995,600	23,000,000	40,000	2027-06-11
	304	11,694,142	97,189,858	108,884,000	10,888,400	97,995,600	90,000,000	130,000	2027-02-20
	404	11,694,142	97,189,858	108,884,000	10,888,400	97,995,600	-	-	-
	504	11,694,142	97,189,858	108,884,000	10,888,400	97,995,600	23,000,000	92,000	2027-08-30
	604	11,694,142	97,189,858	108,884,000	10,888,400	97,995,600	15,800,000	240,000	2027-11-21
	704	11,694,142	97,189,858	108,884,000	10,888,400	97,995,600	43,700,000	200,000	2026-03-21
	804	11,694,142	97,189,858	108,884,000	10,888,400	97,995,600	90,000,000	241,000	2027-11-15
	904	11,694,142	97,189,858	108,884,000	10,888,400	97,995,600	32,400,000	216,000	2027-02-25
	1004	11,694,142	97,189,858	108,884,000	10,888,400	97,995,600	19,000,000	190,000	2027-03-09
	1204	11,694,142	97,189,858	108,884,000	10,888,400	97,995,600	95,000,000	75,000	2027-03-21
	1304	11,694,142	97,189,858	108,884,000	10,888,400	97,995,600	90,000,000	210,000	2027-03-30
	1404	11,694,142	97,189,858	108,884,000	10,888,400	97,995,600	85,000,000	175,000	2027-12-29
	1504	11,694,142	97,189,858	108,884,000	10,888,400	97,995,600	22,000,000	237,000	2027-07-01

※ 현 임차인의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향후 분양 진행 과정에서 임대조건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p>■ 당첨자 선정 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은 ① 순위별 자격요건, ②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 1년이상 거주) 거주자, ③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선정 순차, ④ 추첨순으로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주택형 내에서 동별, 층별, 향별 측 세대 구분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1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2순위자 신청일에 1순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선정순차</p> <table border="1"> <tr> <td>1순위</td> <td>1)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산정) 2) 저축 총액이 많은 자 3) 추첨(1순위 당첨자 결정순자가 동일한 경우)</td> </tr> <tr> <td>2순위</td> <td>추첨</td> </tr> </table>	1순위	1)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산정) 2) 저축 총액이 많은 자 3) 추첨(1순위 당첨자 결정순자가 동일한 경우)	2순위	추첨						
	1순위	1)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산정) 2) 저축 총액이 많은 자 3) 추첨(1순위 당첨자 결정순자가 동일한 경우)									
	2순위	추첨									
<p>※ 주택소유 및 과거당첨사실 판단 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분리세대 포함)</p>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국민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구분</th> <th>처리방법</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 <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 </tr> <tr> <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 <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 <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 </tr> <tr> <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 <td>모두 부적격 처리</td> </tr> </tbody> </table>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p>■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내 동일 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에서 동일 지역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무작위로 결정함</p> <p>■ 동일 순위 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거주신청자가 대전광역시 1년 미만 및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p> <p>■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p> <p>■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p>										
비고	<p>■ 무주택 기간 적용기준</p>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산정.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30세가 되는 날(주택공급신청자가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한다.</p>										

	<p>2.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현장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5 청약신청, 당첨자 발표 안내

<p>■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인감증명 방식</td>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본인서명확인 방식</td> </tr>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여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p>당첨자발표 서비스</p>	<p>청약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3.23.(월) ~ 2026.04.01.(수)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p>문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일시 : 2026.03.23.(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당첨자 자격확인 제출서류)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기간에 제출하여야 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 포함)로 간주함

 ※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3.05.)**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 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하며,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도 모두 제3자 대리 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합니다.

구분	서류형		해당서류(상세)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서류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정보 등 모든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주소변동사항,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주기간 확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청약통장순위 확인서	※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복무확인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국내거소 신고증	배우자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 발급대상이 아닐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정보 등 모든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해외근무자(단신부임)	○		해외 체류 증빙서류	본인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 명령서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는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 사정 불인정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상세)	배우자 및 세대원전원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출생년도부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기간 지정으로 발급)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 발급 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 이하)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부적격당첨 통보를 받은 자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증명서류	해당 주택	· 일반주택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 무허가 주택 : 관한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 폐가, 멸실 주택 : 건축물철거 멸실신고서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 서류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 용도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위임용(본인발급)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주민등록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최하층 주택우선 배정 신청(고령자, 장애인, 미성년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에 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제1호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 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고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7 계약 체결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계약기간	장 소	문의전화	비 고
2026.04.06.(월) ~ 2026.04.08(수) (3일간, 10:00~16:00)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544, 106호 분양사무실(선화동, 참좋은아파트)	042-222-7555	일정 및 시간의 변동 시 별도 공지

- 계약금 납부 : 분양대금 납부계좌 입금 후 입금증 분양사무실 제출[분양사무실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 ※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분양함.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 아래 "계약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우리은행	1005-001-277469	동건종합건설(주)

- 분양대금은 약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 시 비고란에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당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 상기 계좌에 입금하여야 유효하며 동 예금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떤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예시 - 101동104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01010104홍길동'으로 기재하시기 바람.)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 지참 요망(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 시 구비서류**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 포함)로 간주함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3.05.)**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 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인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아래 참조)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계약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계약 및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인지세법」 제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과세문서)입니다.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구입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본 아파트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단, 부동산거래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실제 잔금납부일 또는 잔금 납부약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는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② 계약체결 후에도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자로 관리합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③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부적격 또는 부정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 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 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 시 주택가격과 별도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인 관리비에치금을 관리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관리예치금은 관리소 운영자금으로 충당되는 자금으로서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임)
- 계약자는 잔금납부약정일 또는 실입주일(열쇠수령일) 중 빠른 날로부터 잔금완납이나 입주 또는 소유권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을 해약(해지)하는 경우 계약서 등에 따라 주택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각 세대별 거주했던 임차인 설치한 부합물은 사업주체에서 설치한 시설이 아니며 분양가격에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계약자가 공급금액(잔금)을 납부약정일을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에는 실제 납부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 5%의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하고,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타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의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 기간 만료 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봅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용합니다.
 -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됩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주택공급신청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대출 관련

- 본 아파트는 각 세대별로 일정액의 금융기관 용자금이 존재하여 분양 시 매수자에게 대환되어야 하나,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대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지지 않습니다.
- 개인의 신용상태 및 소득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변동될 수 있으니,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은 사업주체가 지지 않습니다.
- 계약자 본인사정에 의하여 잔금대출이 불가한 분은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연체일자에 대하여 별도의 연체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이 경우 연체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가계자금 대출이자율과 연체 가산율을 합산한 이율로 합니다.
- 대출관련 세부사항은 계약자가 직접 대출은행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잔금 대출관련은 사업주체를 통한 집단 대출이 불가하며,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용자금

(단위 : 천원)

구분(약식표기)	52A	54B	59C	65D
주택도시기금	21,420	22,600	24,500	32,000

- 용자금 대환을 희망하시는 계약자는 용자금을 수탁·관리하는 지정은행(향후 계약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에 내방하시어 용자금 관련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대환대출로 진행하실 경우 이자비용 납부 최소화 및 계약진행의 편의성을 위해 잔금납부일과 대환대출 설정일을 동일한 날로 지정하여 진행하므로 원하시는 잔금 납부일 최소 2주 전에 해당 은행에 내방하시어 대환대출 관련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대환대출로 진행하여 용자금 채무자 명의가 당사에서 분양계약자로 변경될 경우 용자금 수탁·관리 은행은 용자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건물 및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주택도시기금(일시납) 세대는 해당 없습니다)
- 용자금은 일시불 상환 가능하며 일시불 상환 시 대환절차(근저당 설정등기)는 불필요합니다. 세대별 용자금·상환기간·이자율 등은 계약 시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주택가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p>*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p>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p>사람은 제외)</p> <p>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p> <p>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p> <p>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p> <p>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p> <p>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p> <p>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p> <p>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p>
--	---

9 기타 사항 및 유의 사항

■ 사업주체			
구 분	사업주체	시공사	비 고
법 인 명	동건종합건설(주)	동건종합건설(주)	
법인등록번호	160111-0024739	160111-0024739	
■ 분양 관련 문의			
대표번호	분양사무실 위치		비 고
042-222-7555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544, 106호(선화동, 참좋은아파트)		
<p>■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분양사무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p> <p>■ 국민주택기금 및 신탁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세대에 대하여 분양 잔금과 설정해제를 동시이행으로 진행됩니다.</p> <p>■ 청약 당첨 이후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의 전세금 대출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상환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p> <p>■ 세대 방문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 방문기간 : 2026.03.30.(월)~2026.04.01.(수) [3일간 / 시간 : 10:00 ~ 16:00] • 방문 가능 호수는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공실만 가능하니 방문 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p> <p>■ 입주예정일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아파트는 우선분양전환한 주택으로 분양포기세대의 일반분양으로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기존 임차인과 상호 협의 후 계약만기가 도래되어 세대가 퇴거한 후 실입주가 가능합니다. </p> <p>■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이행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아파트는 2006.11.21. 착공 신고를 필하여 임대 의무기간 이후 분양전환을 실시한 주택으로 신규 아파트가 아니며, 2009.10.19. 신설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는 적용대상이 아님. </p>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주차장 차로(2.77m), 주차장 출입구(2.30m)

■ 부대복리시설의 내용 : 지하주차장, 노인정, 관리사무소 등

■ 기타 유의 사항

1. 선순위 청약 접수결과 신청자가 일반 공급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일반 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2. 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3.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4.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5. 세대 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정산하기로 함.
6.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 (㎡)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람.
- 평형 환산방법 : 형별면적(㎡) x 0.3025 또는 형별 면적(㎡) ÷ 3.3058
7. 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8.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 이후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향과 지구 내 시설물의 변경,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행,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도로-비행기 소음 등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9.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0. 층 호수는 호수 배치도를 필히 참조하시기 바람.
11. 단지에 설치되어지는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 입주 후 (가칭) 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하여 운영되어지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12. 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며 총 주차대수는 153대임.
13. 지하주차장 진입의 유효높이는 2.3m이하로 탐차 및 이삿짐 사다리의 차량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4. 단지 내의 도로 및 단지 내 비상 차로 등에 인접한 일부 세대에는 차량 소음 및 불빛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음.
15. 아파트의 주거공용면적 (계단실 코아) 및 기타공용면적 (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 등) 은 각 단지별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됨.
16. 부대 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함.
17. 각 단지별 계획된 부대복리시설로 인해 인근 해당 동 및 세대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18. 세대별 대지지분은 해당 단지의 공동주택 대지면적에서 세대별 분양면적 비율로 배분 산정하였음.
19. 발코니확장세대를 공급함에 따라 세대별 조건 및 필수설비 시설물의 위치조정 등으로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외기 온도차가 심할 경우나 환기 등 관리 소홀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20.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면적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21. 단지 배치 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 차량의 진입이 어려울 수 있음.
22.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지하주차장 출입구로 인해 세대 조망이 일부 차폐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이용 차량의 소음에 의해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23. 지하주차장 채광 및 급/배기를 위하여 지상에 돌출된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저층세대는 시야 차폐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24.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및 우천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25. 주민 부대복리 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 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였으므로 기타 기기 및 비품은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함.
26. 마감자재 내용은 세대 타입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및 마감재와 단지 내 시설에 대한 정보를 취득한 후 청약신청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27. 본 아파트는 내 · 외부 별도 보수공사 없이 현 상태로 분양하는 주택이므로 계약자가 세대내 시설물 등을 확인하고, 시설물(보일러, 벽지, 장판, 싱크대, 세대열쇠 등)의 파손, 노후, 미비 및 청소불량 등의 사유로 하자 보수 등을 요구할 수 없음.
28.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따름.